

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2026. 09. 07. 최초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37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49조에 따라 학점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.

1. 전문학사과정(4년제학과 포함)
2.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
3. 전문기술석사과정

②학점인정 대상 기관에는 본교 및 본교 부속기관을 포함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적대학”이란 학생이 본교 입학 전에 재학하였던 국내외 대학(본교 포함)을 말한다.
2. “선행학습경험”이란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본교(부속기관 포함) 및 국내외의 다른 학교·연구기관·산업체 등에서 이루어진 학습, 연구, 실습 및 근무 경력 등을 말한다.
3. “특별학점”이란 정규 교육과정 이수 외에 자격증 취득, 어학 시험 성적 등 대학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하는 학점을 말한다.
4. “비교과프로그램”이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기획·운영하여 학점 인정 대상으로 선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4조(편입학생 학점인정) ①편입학생에 대한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는 각 학년별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②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.

제5조(전적대학 취득 학점인정) ①전문대학졸업자, 일반대학 졸업자 및 일반대학 2년 이상 수료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제4항, 제32조 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 학위 취득 후 본 대학교에 정원 내·외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공학점은 졸업학점의 15%이내, 교양학점은 졸업학점의 10%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전적대학 교양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적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(부)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학점 범위 내 일괄 ‘교양인정학점(교양선택)’으로

인정한다.

3. 교양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%이내(2년제:6학점, 3년제:10학점, 4년제:12학점)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4.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,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③전적대학 전공학점 인정 절차는 '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지침'에 따른다.

제6조(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) ①국내외의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전공학점은 졸업학점의 15% 이내, 교양학점은 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선행학습경험 교양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(부)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습·연구·실습 이수 시간에 따라 일괄 'RPL교양학점인정(교양선택)'으로 인정한다.

③이외 세부 인정 절차 및 전공학점 인정 관련 사항은 '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지침'에 따른다.

제7조(고교-대학 연계 과정 이수자 학점인정) ①입학 전 고교-대학 연계 과정으로 대학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강좌 등을 이수한 자는 본 대학교 학점으로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

②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와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(부)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학점교류 학점인정) ①국내·외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학점교류 강좌 수강자는 교류 학교에서 강좌 수강 후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, 필요한 경우 성적 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9조(K-MOOC강좌 이수자 학점인정) ①본 대학교에서 개설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를 이수한 학생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와 학점인정 신청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K-MOOC 강좌 운영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주무부서에서는 취합된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교과프로그램 학점인정) ①본 대학교의 비교과프로그램 중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한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선별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졸업학점의 10%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‘비교과프로그램 학점인정 운영 지침’에 따른다.

제11조(진로탐색 및 인턴십 학점인정) ①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진로탐색 기회 마련 및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및 인턴십 운영에 따른 활동 및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12조(국가자격 취득자 특별학점인정) ①본 대학교 입학 후 재학 중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재학 중 전공선택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은 소속학과에서 해당 자격의 직무 내용이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 가능한 자격은 학점인정 공지에 따른다.

③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기준은 ‘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’를 준용한다.

④입학 전 취득한 자격 및 입학 전 취득 후 재학 중 갱신된 자격은 인정하지 않으며, 공인기간 만료 및 공인취소 자격은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.

⑤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와 학점인정 신청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(부)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특별학점인정) ①본 대학교 입학 후 재학 중 본 대학교에서 지정한 어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재학 중 교양선택 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인정 가능한 어학시험 및 성적 기준은 매학기 초 학점인정 공지에 따른다.

③입학 전 취득 및 입학 전 취득 후 재학 중 갱신된 어학시험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 가능하다.

④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와 학점인정 신청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(부)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군휴학자 취득 학점인정) ①본 대학교 입학 후 「병역법」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,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15조(군복무경험 학점인정) ①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최대 4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‘군경력증명서’ 내 봉사활동 이수 시간(기간)이 기재된

증빙서류와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(부)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인정이 불가하다.

제16조(일반원칙) ①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②공지된 신청 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
③이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운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. 다만 전문기술 석사과정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

④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한다.

제17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학점인정 범위, 적용시기

No.	학점인정 유형	학점인정 범위	학점 부여 방법	인정 시기	비고
1	편입학	학년별 수료학점 범위 내	전공/교양 (성적없음)	연 1회 (매 학기 초)	
2	전적대학	(전공)졸업학점의 15% 이내 (교양)졸업학점의 10% 이내	전공/교양 (PASS or 실점수)	교양학점인정 연 2회 (1학기:2월 / 2학기:8월)	편입생 제외
3	선행학습경험	(전공)졸업학점의 15% 이내 (교양)최대 4학점	전공/교양 (PASS or 실점수)	연 1회 (매 학기 초)	편입생 제외
4	고교-대학연계과정	(교양)최대 6학점	교양 (PASS)	연 1회 (매 학기 초)	
5	학점교류강좌	졸업학점의 1/2 이내	전공/교양/일선 (PASS or 실점수)	연 2회 (매 학기 말)	
6	K-MOOC	(교양)본대학 개설 강좌에 한함	교양 (PASS)	연 2회 (매 학기 말)	
7	비교과프로그램	졸업학점의 10% 이내	전공/교양 (PASS)	연 4회 (매 학기 말)	
8	진로탐색제	총장이 따로 정함	전공/교양 (PASS)	총장이 따로 정함	
9	인턴십	총장이 따로 정함	전공/교양 (PASS)	총장이 따로 정함	
10	특별학점(자격증)	(전공)최대 3학점	전공 (PASS)	연 2회 (매 학기 말)	
11	특별학점(어학시험)	(교양)최대 2학점	교양 (PASS)	연 2회 (매 학기 말)	
12	군휴학자 학점취득	학기당 3학점, 연간 6학점 이내	전공/교양/일선 (PASS)	총장이 따로 정함	
13	군복무경험	(교양)최대 4학점	교양 (PASS)	연 2회 (1학기:2월 / 2학기:8월)	

※ 인정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

※ 대학 사정에 따라 인정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

※ 학점인정의 합산 최대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1/2 범위 내에서만 가능

※ 선행학습경험에는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'학위연계형 마이스터 평생직업 교육과정'을 포함함

[별표2] 특별학점인정 기준**■ 어학성적 기준점수**

TOEIC	TOEIC Speaking	TEPS	TOEFL	OPIc	인정학점
700점 이상	IM2 이상	264점 이상	79점 이상	IM2 이상	교양선택 2학점 (PASS)

※ 어학성적 학점인정은 영어만 대상으로 하며, 상기 어학시험 성적 외 시험은 인정하지 않음.

■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민간자격 포함) 기준 : 매 학년도 공지에 의함

[별지 제2호 서식]

교양학점인정 신청서

(군복무경험 학점인정)

경 유	지도교수	학과장					
학과			학번			성명	
군복무경험				교양학점인정		비 고	
활동실적		시간	신청과목명	신청학점			
					신청과목명은 인정교과목 中 택1 • 사회봉사1 • 사회봉사2 • 사회봉사		
합 계							
본인은 학칙 37조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)							
교 무 처 장 귀하							
제출 서류	1. 군경력증명서(육·해·공군 참모총장 발행) 또는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1부						
작성 방법	- 군복무경험 활동실적 및 시간 : 군경력증명서의 활동 실적 및 이수 시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(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및 실적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) - 교양 학점인정 신청과목명은 비고에 있는 과목 중 택1 하여 작성	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특별학점인정 신청서

(☐자격증 / ☐어학성적)

경 유	지도교수	학과장		
학과			학번	
성명			학년/반	
입학일자				
자격증			어학성적	
자격명			시험명	
등급			점수	
취득일자			취득일자	
신청학점			신청학점	
본인은 학칙 37조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) 교 무 처 장 귀하				
유의사항	- 인정되는 자격증 및 어학시험의 종류는 신청 학기에 공지된 종류에 한하며 재학 중 취득한 경우만 인정 - 구비서류 미비 및 허위(위조)로 판단될 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			
첨부서류	1. 관련 자격증 / 어학성적표 사본			

